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이 개정됨(법률 제19305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치단체 명시와 관련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조 신설)

- 1) 법률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 법에서 열거한 8개의 시스템 외에 추가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연계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용·연계를 위한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나. 신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세부 사항 규정
(안 제22조의2 신설, “별표” 신설)

1)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별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관한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거나 진단서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등으로 명확히 함.

2)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및 자료에 대해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행기관 지정(안 제23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행기관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①법 제5조제4항 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②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관의 명칭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지역보건의료정보의 명칭, 범위, 이용 근거 및 정보의 보유기관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연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지역보건의료정보의 범위 제한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지역보건의료정보의 제공 방법 및 지역보건의료정보 전달체계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청에 따른 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서비스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진단서 등에 의한 서비스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재산·건강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제3항 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22조의2제2항 관련)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22조의2제2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료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에 관한 자료
4.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보상·지원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퇴직금, 자격정보 등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급여·보상·지원에 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사업주·근로자에 관한 자료 및 보험급여 등 급여·보상·지원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 보험료, 자격정보 등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8.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종합소득명세, 일용근로자소득명세·근로장려금·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휴업,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정보
 1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에 관한 자료
 1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자료
 1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 의료정보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
 14.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자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료,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자료,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율 산출에 관한 자료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관한 자료
 16. 「여권법」에 따른 여권자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료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
 1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19.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0.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자료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자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

진단 관련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23.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에서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24.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에 관한 자료
25.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1호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자료
26. 그 밖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망 또는 자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u> <u>템의 연계 및 이용 등) ①법 제5</u> <u>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u> <u>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u>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u> <u>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u> <u>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u> <u>2.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u> <u>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u> <u>한 시술비 지원 자료를 처리</u> <u>하는 정보시스템</u> <u>②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지역</u> <u>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u> <u>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u> <u>여 이용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u> <u>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u> <u>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u> <u>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u> <u>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u>(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u> <u>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u> <u>청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u> <u>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u>		

포함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관의 명칭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지역보건의료정보의 명칭, 범위, 이용 근거 및 정보의 보유기관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

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
당하는지 여부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적
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
지 여부

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연계하고자 하는 시
스템의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
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협
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
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
다.

1. 이용 대상 지역보건의료정보
의 범위 제한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및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u>	2. <u>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u> 3. <u>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지역보건의료정보의 제공 방법 및 지역보건의료정보 전달체계</u> 4. <u>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u> ⑤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u> ⑥ <u>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u>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① <u>시·도지사</u>----- ----- -----
---	--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 13. (생략)

② (생략)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

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① -----
시장·군수·구청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신청에 따른 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 ④ (생략) <u><신설></u>	<u>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u> 2. <u>진단서 등에 의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u> 3. <u>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재산·건강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 <u>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u>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808